

동대구 동화아이위시

[가점제] 당첨자 (예비자 포함) 제출서류 리스트

■ 기본 서류

※ 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0.07.02) 이후 발행분에 한함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해당			
○		인감증명서 [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서명인증서(외국인)]	본인	-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. (용도: 아파트 계약용)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참석만 가능 (대리인 계약진행 불가)
○		인감도장		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○		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		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)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(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
○		주민등록표등본		모든 사항 표시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 등)
○		주민등록표초본		모든 사항 표시 (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/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 /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○		가족관계증명서	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 (해당자만)	만30세 미만 기혼 당첨자가 무주택 기간 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
	○	복무확인서	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
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
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가족관계증명서	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인 경우
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 (손·자녀)	만 30세 이상 미혼으로서 1년이상 부양한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혼인관계증명서		

■ 무주택여부 소명 서류

-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(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관련)

해당서류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건물 등기부등본	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(가족대장등본 포함)
무허가 건물 확인서	철거 예정 증명서 등
소형·저가 주택 확인서류	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
기타무주택 확인서류	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기타서류	사업주체가 요청하여 인정하는 서류

■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

- 서류제출 대리인은 가족에 한함 (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)

- 제출처 - 견본주택내 상담석 (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6-1번지)
문 의 - 053- 752-3355

★ 유의사항

- ①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[2020.07.02]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②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 7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이력 이 모두 표기된 발급 분에 한합니다.
- ③ 위의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